

통영관광개발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안정과 혁신의 조화로 통영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알찬 공기업!”

우리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함께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 8. 26.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

I 채용 개요

1. 선발 분야 및 인원: 총 2명

(단위: 명)

방법	구분	직종	직급	직렬	직류	인원	담당직무
공개경쟁 (신입)	일반	기간제	-	체육	수영강사 (시간강사)	2	수영장 수영강습 및 수상안전근무
계						2	

※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근무지 및 계약 시작일은 공사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보수 및 근무조건

구분	채용분야	근무시간	계약기간	보수
기간제	수영강사 (시간강사)	주4일, 1일 6시간 (화,수,목,금)	임용일로부터 1년	시간당 25,000원 (각종 제수당 포함)

※ 사업장 운영방법에 따라 강습시간 및 요일 등 조정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II 응시자격

1. 결격사유: 통영관광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저축이 되지 아니한 자-<별첨>

2. 채용분야별 응시연령 및 거주지

직종	구분	직렬	직급	직류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거주지
기간제	신입 (일반)	체육	-	수영 강사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다음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에 한하여 응시 가능 1.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2. 공고일 전일까지 통영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최종임용일까지 주민등록주소 및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3. 병역사항: 병역법 제71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아니한 자

4.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전공, 종교 등: 제한없음

5. 기타: 공사가 정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6.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자격

직종	구분	직렬	직급	직류	응시자격
기간제	신입 (일반)	체육	-	수영 강사	○ 수영종목 생활(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및 수상안전요원 자격 소지자 ○ 평일 새벽, 야간근무 가능자(06:00~21:00) ○ 직무분야 경력자 우대 ○ 최소 6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 가능한 자

III 채용일정 및 접수방법

구분	채용일정	세부내용
채용공고	2026. 8.26.(수)	공사 및 통영시 홈페이지, 클린아이 등
원서접수	2026. 8. 27.(목)~ 9. 7.(월) ※ 16:00 접수마감	공사 경영지원부(2층) 인사담당자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ttdc3303@ttdc.kr)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9. 9.(수)	공사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6. 9. 14.(월)	공사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16.(수)	공사 홈페이지
임용후보자 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	2026. 9.21.(월)~9.23.(수)	공사 경영지원부(2층)
임용일	2026.10. 1.(목)	

※ 상기 일정은 공사의 사정 및 채용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V**시험방법**

1.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 충족여부 확인(내부위원 2명 위촉)

2. 면접시험

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

나. 면접은 다대일(면접관 다수 對 면접자 1) 방식을 원칙

다. 평가항목: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업무경험 등 실무 검정 평가

구분	업무적합도	태도·열정	일반상식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계
점수	20	20	20	20	20	100

라. 합격기준: 최대 5분위 평정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단,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최저 등급으로 채점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3. 가점사항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10%	취업지원대상증명서 제출 시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전형별 만점의 3%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제출 시

4. 예비합격자 운영

가. 운영요건: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수시 임용 가능

나. 운영규모: 채용분야별 1배수(적격자 없을 시 예비합격자 미선정 가능)

다. 운영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합격자 결정

가. 면접위원 채점결과 산술평균에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나. 적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다. 최종점수 합산결과,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는 우대사항 보유자, 관련경력 많은자, 가점 대상자 순으로 결정

V**제출서류**

1. 제출서류

가.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 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요구할 수 있음

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 바람

제출시기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온라인 접수)	1. 입사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신체검사

가. 채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실시

나.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또는 공사 지정 검진기관에서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채용신체검사 비용은 공사가 부담

다. 해당 직무에 따라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단, 최근 연도(최대 2년) 해당

3. 임 용

가.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정해진 기간 내 임용예정자 등록

나. 임용예정자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며, 조회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임용예정자 등록기간 내 미등록시 임용포기로 간주하여 차순위자 임용

라. 임용 후 6개월 내 퇴사하는 경우에도 동일

마. 임용일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까지 유효

Ⅵ 이의신청 안내

1. 이의신청

가. 접수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나. '이의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 이메일 제출(ttdc3303@ttddc.kr)

다. 이의신청 처리대상: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항

Ⅶ 기타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작성 시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료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요청 시 반환합니다.(단, 최종합격자는 제외)
3.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자나 결격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용예정인원 범위내에서 예비합격자 순번으로 추가선발 할 수 있으며,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채용 과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용비리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단계로 시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하고, 발생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5. 우리 공사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므로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시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나이, 병역, 결혼여부 등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최종합격자에 대해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 후 최종 계약하며, 임용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채용예정 인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공사 경영지원부(640-2809)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작성요령 1부.

2.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끝.

관련근거: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채용 신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처분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공사 인사규정 제30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일반직 : 60세
2. 전문직·공무직 : 60세

▶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조3(채용비위에 관한 통제)**

- ② 비위로 채용된 자는 즉시 합격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